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61호 2010. 7. 26.

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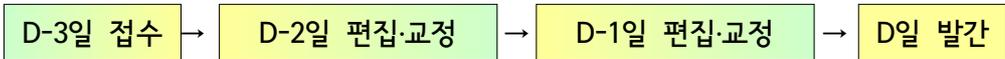
제2010-22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2

공 고

제2010-513호 201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3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10-22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 아 래 --

대상시설(지 역)			지정(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명	소재지	소 유 자 (점유자 ·관리자)				
단독주택	중랑구 면목동 1075-48호	- 소유자 : 안춘학 - 점유자 : 안경식	-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전도 및 붕괴 위험	D급	- 월1회 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513호

201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국토해양부와 중랑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540,157원 이하인 세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승용차 재산가액 산정시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사용 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상이등급자)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2.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0년 8월 31일까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T2094-234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목록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
(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